

[별표 8]

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(제68조제1항관련)

구 분		등 록 기 준
자 본 금		2억원 이상
기술 능력	전기분야기술자	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
	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	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시공·취급기능사 1인 이상
	고압가스관련 기술자	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
	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	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
주택관리사등		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
장 비		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(누전측정기를 말한다)1대 이상

비고 : 위 표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중 해당분야의 것을 말한다.